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06

발의연월일: 2020. 12. 3.

발 의 자:이개호・위성곤・유동수

윤재갑 · 송갑석 · 서삼석

홍성국 · 김병기 · 인재근

주철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농업기계의 기술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고시로 운영되고 있어 법률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취소 규정 마련(안 제7조제3항 신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다른 사람의 산업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나. 농기계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제조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9조제6항 신설)

제조업자 • 수입업자 • 판매업자에게 수입 • 생산 • 판매 관련 자료를 요

구할 수 있도록 함.

- 다.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취소 시 청문 실시(안 제14조제1호 신설)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취소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마련함.
- 라. 과태료 부과 규정 개정(안 제18조제2항제1호 신설)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 ·방해·기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률 제 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한 농업기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기술 농업기계로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받은 경우
- 2. 다른 사람의 산업재산권 등을 침해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의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관계기관에 수입, 생산, 판매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취소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제6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신기술 농업기계) ①・②	제7조(신기술 농업기계)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한
	농업기계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에 의하여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의 산업재산권 등
	을 침해 한다고 인정되는 경
	<u>우</u>
제9조(농업기계의 검정) ① ~ ⑤	제9조(농업기계의 검정) ① ~ ⑤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기계의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
	<u>해 필요한 경우 제조업자·수입</u>
	업자· 판매업자 및 관계기관에
	수입, 생산, 판매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를 거부·방해·기피 하여서는

⑥ (생략)

제14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 야 한다.

<신 설>

- 1. (생략)
- 2. (생략)
- 제18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 1. (생략)
- 2. (생략)
- ③ (생략)

아니 된다.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14조(청문) -----

----.

- 1.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취소
- 2. (현행 제1호와 같음)
-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1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② -----
- 1. 제9조제6항에 따른 자료제출 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 (현행 제1호와 같음)
- 3. (현행 제2호와 같음)
- ③ (현행과 같음)